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12월 9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12. 1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집중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 책정협의 (3급, 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 현재 균형발전국 T/F로 운영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이관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局단위 한시기구 설치⇒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안 제5조)
 - 본청기구 : 1실 7국 1본부⇨1실7국1단1본부(+1단)
 - ※ 기한 : 2010.12.31까지 (직제순은 문화관광환경국 다음으로 조정)

- 분장사무 이관 (안 제9조, 안 제13조의2)
 - 균형발전국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 ·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당면한 정책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局단위 한시기구로 첨단의료 복합단지 기획단을 2010.12.31일까지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행정사무는 지난 9월 21일 균형발 전국에 2과 7팀을 설치하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의결한 사항임.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설치는

정부가 지난 8월 10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역을 공동 지정함에 따라 두 지역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함.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수로 지정한 것은 단지간의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타 지역과 차별 화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신속하고 효율적 인 대처를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됨.

다. 주요 개정내용은

- □ 局단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설치
 - 현행 1실 7국 1본부에서 1실 7국 1단 1본부로 局단위 기구로 설치
 - 균형발전국장 겸직체계를 해소, 직제는 문화관광환경국 다음
 - 운용기간 : 2010. 12. 31.까지 한시기구1)로 운영
-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사무이관
 - 현행 균형발전국 소속의 2과 7팀 29명을 이관

혀 행

〈균형발전국〉(6과 20팀 92명)

- 균형정책과 (3팀 17명)
- 지역개발과 (3팀 15명)
- 교통물류과 (3팀 16명)
- 건축디자인과 (4팀 16명)
- 총괄기획과 (4팀 16명)
- 조성지원과 (3팀 12명)

개 편

〈균형발전국〉 (4과13팀64명)

- 균형정책과 (3팀 17명)
- 지역개발과 (3팀 15명)
- 교통물류과 (3팀 16명)
- 건축디자인과 (4팀 16명)

〈첨복단지기획단〉 (2과7팀29명)

- 총괄기획과 (4팀 17명)
- 조성지원과 (3팀 12명)

○ 이관사무는

-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라.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겸직을 하고 있던 균형발전국 소관 첨단의료 복합단지조성 지원업무를 신설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과대 국인 균형 발전국의 과대업무를 해소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마스터플랜과 의료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

② 기존의 직제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임

③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임, ④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⑤ 존속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함

및 연구기관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집중적이고 성공적인 지원체계를 위하여 첨단의료 복합단지 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정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개정취지에 이견은 없음.

다만,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 2038년까지 30년간 총5조 6,000억원을 투자하는 장기계획을 가지며, 2012년까지 단지를 조성한 다고 발표하고 있음.

충청북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은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해 추진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201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청북도의 기구설치기준은 9개 실국본부를 두도록(「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하고 있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10개 실국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 토론 요지: "생 략 "

Ⅵ. 심사 결과 : 원안의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실장·국장·단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단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보건복지여성국, 문 화관광환경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9조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 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 2.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4.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시기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균형발전국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장 국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	제2조(실장·국장· 단장 ·본부장·담당관·과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u>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u>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
<u>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u>	<u>장·단장·본부장·담당관</u> 과장의 직급
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	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으로 정한다.	<u> 규칙으로 정한다.</u>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제5조 <u>(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u>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행정국 ,경제	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행정국,
통상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농정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	<u>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 첨단</u>
<u>를 둔다.</u>	<u>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및</u> 소방본부를 둔다.
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	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을 분장한다.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10.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	<u><삭 제></u>
<u>치에 관한 사항</u>	
11.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	<u><삭 제></u>
에 관한 사항	
1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u><삭 제></u>
사항	
13.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u><삭 제></u>
에 관한 사항	10 10 (-))
<u>14.~16.</u> (생략)	10.~12.(종전의제14호부터제16호까지와 각각 같음.)
<u><신 설></u>	제13조의 2(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첨단의료
	복합단지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u>다.</u>
	1.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
	에 관한 사항
	2.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오송 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
	<u></u> 한 사항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본 부
서 {	울 특 별 시	14개 이내
광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12개 이내
역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개 이내
시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내
도	경기도	18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개 이내

비고 :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